

세탁기 안전기준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변경 등을 포함하는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을 6월 30일 자로 확정·고시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이번 세탁기 안전기준은 기술표준원이 국내 세탁기 제조사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고시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고시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개구부(투입구)가 직경 200mm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를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kgf) 이하의 힘으로 밀어서 열리는 구조적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사용자가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을 알 수 있게 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kg)과 수량(L)의 표시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기술표준원에서는 올해 안으로 세탁기 이외의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도입·적용중인 IEC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 UL 등의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사용 환경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고예방 차원의 안전기준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의 누설 전류 기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부품의 안전보호등급 및 기타 잠재적인 위험요소 등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올해 안으로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강화되면, 국내 전기 용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전기용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60335-2-7(전기세탁기 안전기준) 개정내용을 보면, 7 표시 및 사용설명서, 7.1 기기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표준 세탁 용량(kg)과 세탁조의 용적(L)을 함께 명기해야 한다. 주요 수위별 세탁 용량(kg)과 수량(L)을 명기해야 한다. (수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기기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체, 문, 뚜껑, 꼬리표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명기해야 한다. 특히, 드럼세탁기 안전사고(간힘)

방지를 위한 아래와 같은 경고문구나 도안을 제품 전면의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예) 어린이가 세탁기에 들어가면 안전사고(간힘)가 발생하므로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22 구조에서 22.105 직경 200mm를 초과하는 치수를 갖는 개구부를 갖고 있으며, 부속서CC에 규정된 내용적이 60L를 초과하는 드럼이 장착된 기기는 93N(9.5kgf) 이하의 힘에서 문이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비고세탁조와 외부가 통기될 수 있는 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적합 여부는 다음 시험으로 판정한다. 힘은 문의 중앙점(직경 5cm 이내)에서 면에 수직 방향으로 적용한다. 힘은 13~18N/s의 비율로 문에 적용한다.

비고 1 장식용 문이 세탁기에 설치된 경우, 문을 닫은 채로 시험한다. 비고 2 세탁조 안에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밀어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문 외부에서 잡아당겨 시험할 수 있다.

부속서 CC(규정) 세탁조의 내용적 측정방법에서 7.1에 언급된 세탁조의 용적(L)은 다음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세탁조 입구를 제외하고 세탁조 내부의 모든 구멍을 비닐류의 재질로 막고 부피를 측정한다. 모든 구석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채워져 있는지 여부와 세탁조 내의 구멍을 통하여 비닐류의 재질이 들어간 부분

이 없음을 확인한다. 세탁기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저울 위에 세탁기의 드럼 뒤쪽 면을 지지해 놓은 후 빈 세탁기의 질량을 측정한다. 문의 면과 세탁조 입구가 접하는 면으로 결정된 레벨까지(그 레벨에 도달하기 전에 물이 넘치는 경우는 그 위치까지) 세탁조에 물을 채운다. 물의 온도와 물을 넣은 세탁기의 질량을 측정한 후 kg단위의 물의 질량을 결정한다. 앞에서 막아놓은 비닐류의 재질이 세탁조의 표면 안쪽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부피를 더하거나 뺀다.